

2023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지침 (학생용)

2023. 6. 5(월)

1. 기말시험 관련 지침

코로나19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코로나 양성 **확진자는 법적 의무격리에서 권고(5일간)격리로 전환** 되었습니다. 이에, 2023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은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**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시행합니다.** 다만 평가의 공정성, 확진자 및 교강사 의사에 따라 원격시험 또는 그 외 평가로도 대체 운영합니다.

2. 코로나19 확진자 기말시험 세부 지침(권고 격리기간내 시험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)

[확진인정 기준] : PCR 검사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

※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,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인정

[대면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]

- ① 확진 학생은 **사전에 교강사에게 대면응시 의사 협의(별도 지정고사실 사전 확인)**
- ② 대면시험 **등교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**
- ③ 교강사 안내에 따라 **별도고사실 입실, 시험 응시**
- ④ 가급적 시험 과정만 참여 권고

[비대면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] 학생 본인 또는 교강사가 대면시험을 희망하지 않고, 대체 시험이 가능한 경우

- ① 확진 학생은 해당 **교강사와 비대면 시험응시 또는 대체 시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의사 협의**
- ② 교강사의 대체 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 허용시 해당 평가 응시

3 비대면시험 또는 대체평가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

학생 제출서류

- ① 비대면 시험 신청서 교강사에게 사전 제출
- ② 코로나19 검사 양성 증빙 서류(PCR검사서 또는 병원 신속항원 검사결과서)

4. 권고격리에 따른 격리시 출결 : 공결 인정(검사일로부터 5일간)

